

울산광역시 남구, 송정1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8.16 (화)]

1.건설위치	울산남구 울산송정1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12번길 50, 행복주택('19.3월 최초입주)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4로 56, 행복주택('19.7월 최초입주)
--------	---------------	---

'19.0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신청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대 연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능력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대학생·청년계층의 경우 1인 1주택,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6)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2.08.17~2003.08.16**)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완화]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완화]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이하(**[완화]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완화] 만 9세 이하**) (**2015.08.16 이후 출생**)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1957.08.16 이전 출생)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금회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사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하여 현장(LH울산권주거복지지사)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격 완화내용 (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 세부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참조)

• 금회 공고는 입주자격 완화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이며, 일반 입주자격자와 완화조건에 해당하는 완화입주 자격자의 임대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공급대상자보다 완화된 조건의 내용요약은 아래 사항과 같으며, 추후 일부 사항들은 개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각 계층별 모집 요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조건 완화사항

소득기준 (금회공고 한시적 적용)	배제
--------------------	-----------

• 자산요건 완화사항

총자산기준 (금회공고 한시적 적용)	배제
---------------------	-----------

• 기간요건 완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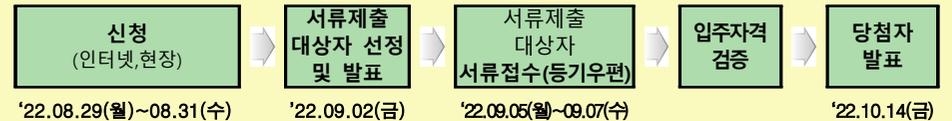
공급계층		일반조건	완화조건
청년(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10년 이내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만6세 이하	만9세 이하

• 위 자격요건에 따른 입주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른 재계약 요건(소득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초 1회 초과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2회 초과 시 해당 단지 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8. 유의사항 참고)

■ 유의사항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사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2. 임대대상 및 조건

■ 울산남구(해피투게더타운)

단지	공급 형태 (㎡)	공급 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대기중 예비자수	모집 호수 (10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천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울산 남구	16A	대학생, 청년(소득무)	0	40	16.67	8.9207	2.8396	9.2302	37.6605	15,110	1,511	13,599	88	(+)5,000	20,110	63,000	6	
		청년(소득유)								16,000	1,600	14,400	93	(-)12,000	3,110	113,000		
	26A 26D 26E	주거급여 수급자	0	10	26.26	14.0526	4.4732	14.5402	59.3260	20,560	2,056	18,504	119	(+)11,000	31,560	64,000	20	벽식 개별 난방
	26B/C	고령자	0	10	26.11	14.0938	4.4477	14.4571	59.1086	25,340	2,534	22,806	147	(-)13,000	3,000	120,080		
	36A 36B 36C 36D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0	40	36.16	19.3505	6.1596	20.0218	81.6919	36,540	3,654	32,886	213	(+)17,000	27,040	62,000	무자녀 : 6 유자녀 : 10	
													(-)20,000	5,340	188,660			

■ 울산송정1

단지	공급 형태 (㎡)	공급 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대기중 예비자수	모집 호수 (285)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천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울산 송정1	16	대학생, 청년(소득무)	9	100	16.97	10.7841	1.5056	9.3718	38.6315	13,150	660	12,490	72,000	+2,000	15,150	62,000	6	
		청년(소득유)								13,930	700	13,230	76,000	-10,000	3,150	92,830		
	26A	주거급여 수급자	0	55	26.96	17.1326	2.3920	14.8889	61.3735	18,270	920	17,350	100,000	+3,000	16,930	61,000	20	벽식 / 지역 난방
	26B	고령자	0	10	26.96	17.1326	2.3920	14.8889	61.3735	23,140	1,160	21,980	127,000	-11,000	2,930	98,910		
	36A	고령자	2	10	36.85	23.4175	3.2694	20.3508	83.8877	31,650	1,590	30,060	174,000	+8,000	26,670	60,000	2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0	100						33,320	1,670	31,650	183,000	-15,000	3,270	131,250		
	36B	고령자 (주거약자)	0	10	36.85	23.4175	3.2694	20.3508	83.8877	31,650	1,590	30,060	174,000	+13,000	36,140	62,000	무자녀 : 6 유자녀 : 10	
														-19,000	4,140	166,580		

-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은 각 형태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위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울산송정1 16형 주택에는 책상 및 가스쿡탑,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울산 남 구 16형의 “대학생·청년계층”, 26형의 “청년·주거급여수급자”의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공급형태로 대기 중인 예비자 및 공가세대 수에 따라 당첨되는 예비순번이 앞 번호인 경우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며 대기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30일, 추후 안내) 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계층)별로 최대 거주기간이 있습니다. 각 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은 공고문 「8. 유의사항 -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위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2.08.16.)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외국인인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및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⑦과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④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⑦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④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소득요건 배제**(기준조건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금회조건	정상조건
1인	배제	3,854,536원 이하(120% 이하)
2인		5,328,807원 이하(110% 이하)
3인		6,418,566원 이하(100% 이하)
4인		7,200,809원 이하(100% 이하)
5인		7,326,072원 이하(100% 이하)
6인		7,779,825원 이하(100% 이하)

- ④ **총자산요건 배제 (단, 자산 중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기준조건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시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22.08.16)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상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 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부산광역시, 경주시, 청도군, 밀양시, 양산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경상남도(1순위 해당지역 제외)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⑦와 ②~⑤를 만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④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①-⑦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08.17.~2003.08.16.)
- ①-④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정상조건 5년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소득요건 배제**
(기준조건 해당 세대내주택공급신청자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금회조건	정상조건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배제	3,854,536원 이하(120% 이하)
	2인		5,328,807원 이하(110% 이하)
	3인		6,418,566원 이하(100% 이하)
	4인		7,200,809원 이하(100% 이하)
	5인		7,326,072원 이하(100% 이하)
	6인		7,779,825원 이하(100% 이하)
세대원(본인)	1인(신청자본인 소득만기준)		3,854,536원 이하(120% 이하)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총자산요건 배제 (단,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557만원 이하 일 것)**
(기준조건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557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 공고일(22.08.16.)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부산광역시, 경주시, 청도군, 밀양시, 양산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경상남도(1순위 해당지역 제외)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3-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②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④와 ③-⑥을, 한부모가족은 ①-④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①-②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①-④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⑥ (한부모가족) 만 9세 이하(정상조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정상조건 7년 이내) 또는 만 9세 이하 자녀가 있을것
 ③ 소득요건 배제 (기준조건: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금회조건	정상조건(맞벌이)	정상조건(일반)
2인	배제	6,297,681원 이하(130% 이하)	5,328,807원 이하(110% 이하)
3인		7,702,279원 이하(120% 이하)	6,418,566원 이하(100% 이하)
4인		8,640,971원 이하(120% 이하)	7,200,809원 이하(100% 이하)
5인		8,791,286원 이하(120% 이하)	7,326,072원 이하(100% 이하)
6인		9,335,790원 이하(120% 이하)	7,779,825원 이하(100% 이하)

④ 총자산요건 배제 (단,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557만원 이하 일 것)
 (기준조건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557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중복시 전부 무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공고일(22.08.16)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울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부산광역시, 경주시, 청도군, 밀양시, 양산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경상남도(1순위 해당지역 제외)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3-4.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소득요건 배제
 (기준조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금회조건	정상조건
1인	배제	3,854,536원 이하(120% 이하)
2인		5,328,807원 이하(110% 이하)
3인		6,418,566원 이하(100% 이하)
4인		7,200,809원 이하(100% 이하)
5인		7,326,072원 이하(100% 이하)
6인		7,779,825원 이하(100%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총자산요건 배제 (단,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557만원 이하 일 것)
 (기준조건: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추첨

3-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접수		
<p>[인터넷(PC, 모바일접수)] '22.08.29.(월) 10:00 ~8.31.(수) 16:00 (인터넷(PC, 모바일접수는 사전일과 마감일을 제외 24시간 가능) * 현장접수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함 * 현장접수장소 : LH울산권주거복지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한화생명 2층)</p>	<p>'22.09.02.(금)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p>	<p>[등기우편] '22.09.05.(월)~09.07.(수) * 우편 보내실 곳 : (우)44676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한화생명 2층 건설임대 공급담당 앞 * 등기우편은 '22.09.07.(수)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p>	<p>'22.10.14.(금)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 게시</p>	<p>추후 개별 통보 (계열 순번 도래시 개별안내)</p>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 청약신청 방문 서류제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단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방문접수 가능하며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신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 현장접수 일시 : 2022.08.29.(월)~08.31.(수) 10시~16시 ※ 주말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장소 : LH울산권주거복지지사(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한화생명 2층)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향후 배점합산 결과 또는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신청접수·서류제출·계약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LH청약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시 등기우편 및 인터넷으로 제출가능하며, 등기 제출장소는 LH울산권주거복지지사 건설임대 공급담당 앞(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한화생명 2층)입니다.

* 온라인 청약신청 하였으나 서류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2.08.29.(월)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22.08.31.(수) 오후 4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일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 22.08.29.(월)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22.08.31.(수) 오후 4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C에서 수정 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2.09.02(금)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22.09.05.(월) ~ 09.07.(수), 09.07.(수)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

- 등기우편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등기우편물 발송을 통해 담당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22.09.07.(수)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서류미도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봉투 겉면에 신청하신 단지 명(울산남구 또는 송정1 행복주택)을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79 한화생명2층 LH울산권주거복지지사 "LH울산권지사 건설임대 공급 담당자 앞" (우편번호 44676)

○ 현장 신청자(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함) : 접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8.1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대학생 계층, 청년계층 및 한부모가족계층과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첨1]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별첨1]	· (작성방법) 본 공고문에 별첨된 확인서 양식을 출력한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작성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입주자격 완화시행 관련 확인서[별첨1]	· 입주자격 완화시행 관련 확인서(서류제출 시 작성제출)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립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 계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상)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주민센터
청년 (만19세이상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계층	만39세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 직장 국채청 해당 직장사무서 해당 학교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예비 신혼부부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주민센터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채청 해당 직장사무서
고령자	공통서류 외 추가서류 없음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재청약자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복주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http://apply.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거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기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되어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센터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부서(LH울산권주거복지지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p>■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p>
<p>■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p>
<p>■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p>
<p>■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 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p>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p>•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을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자동차	<p>•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공공차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공공차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p>
금융자산	<p>•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p>
기타 자산	<p>•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임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p>
부채	<p>•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p>
자동차	<p>•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공공차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공공차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p>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용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용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사업 소득	임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저축·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지출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공품(일시금으로 받는 공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	- 지방세정 자료
총 자산	일반 자산		

		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축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자격 완화사항	■ 입주 자격 완화 내용	
	항목	내용
	소득요건 완화	소득요건 배제
자산요건 완화	자산요건 배제 ※ 단,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기준은 완화대상이 아니며, 대학생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계층은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일 것을 충족하여야 함	
기간요건 완화	청년(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신청 시 총 소득종사기간 기본 : 총 5년 이내 → 완화 : 총 7년 이내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tr> <td>입주자격</td> <td>최대 거주기간</td> </tr>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 <td>6년</td> </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 <td>20년</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p>■ 재정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거주기간 및 재정약에 관한 기준									
예비입주자	<p>■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가함 갱신계약은 입주 이후 매 2년마다 진행되며, 원화된 자격으로 입주허더라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른 재계약 요건이 적용되며 해당기준에 따른 소득 및 자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상기 재계약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합니다.(주택소유는 재계약 불가) - 상기 재계약요건 2회 이상 충족하지 못할 시 퇴거하셔야 합니다. 단, 해당 단지 내 공공주택 특별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향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지구 및 단지특성	<p>■ 단지 내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는 20층~25층 규모로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중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하층 층고,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음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조망, 소음 및 매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지 내 보행자로 인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단지경계부의 시공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주택단지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단지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대지경계에서 3미터 set-back하여 가승차로 및 감속차로가 설치(길이 등 세부내용은 추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되며, 이 부분은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음. 단지 내 아파트 주출입구는 단지배치 및 단지 내 고저차로 인하여 출입개소와 방향 및 형태(장애자 램프 포함)는 동별로 상이함 아파트 공용부위(E/V 홀, 계단실 등)의 평면형태 및 마감은 동별 라인별로 상이함 주차대수는 총 667대(지상:199대, 지하:468대, (근생4대 포함)로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주차위치 및 방향은 단지 및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은 안전과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외벽 부위는 도장으로 시공되며 색채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동은 일부 보행자 동선과 충돌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문고, 경로당, 교육시설 등)에는 내부시설물(가구 및 인테리어, 운동기구)이 설치되지 않으며,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무인택배보관함은 경비실,관리사무소에 설치함 경비실은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가 설치됨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나 동별로 접근거리 및 방식이 상이하며, 단지배치의 특성상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배수 및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트렌치의 일부구간에는 물이 고일 수 있음 지하주차장 옥외계단실, 환기탑, 채광창, 장비반입구 및 지하저수조 환기탑 등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탑이 설치되는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조경 식재(수종 및 배식) 및 시설물(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과 관련된 사항은 팜플렛 등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음 단지 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디자인(재질 및 색상 등)과 범위 및 단지경계부위 탐장의 디자인(재질 및 색상 등)과 설치구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휴게소 등에 인접한 동은 소음 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일부 동 전·후면에 재활용품 및 쓰레기분리수거대가 인접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외부 표고차이 및 주변 아파트로 인하여 일부 세대대의 경우 조망 기타 생활 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인접동 및 인접세대의 배치 등에 따라 세대별로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자전거보관대는 동별로 분산 설치되며,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임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지만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분배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있음 <p>■ 발코니 및 마감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단지의 일부 마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시공될 예정임. 단 공사 진행 중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품목 : 일반가구(신발장), 창호류(합성수지창), 조명기구,비디오폰, CCTV 등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히 및 의장 등록 또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시공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내역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 계약체결하시기 바름(마감재 내역의 “급”은 동등품질 이상의 유사자재 적용이 가능함을 의미함)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신발장 등)설치 부위의 벽체 및 바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현관, 발코니, 욕실 등 바닥 단차부에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PD점검구는 욕실천장 및 가구류 내부 또는 PD 인접실 등에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형태에 따라 마감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신발장 하부 및 후면에는 급수계량기 및 세대통합관리반(분전함 및 통신단차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신발장 뒷판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 설치 및 세대통합관리반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름.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전 문업체가 설치토록 하시기 바름
- 세대내 목재문, 가구 인테리어시트는 자체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레인지후드 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협소함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은 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및 입주 전 설치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름
- 전용16형의 경우 발코니 폭이 협소하여 세탁기 설치가 곤란하오니 세탁기 설치전 필히 확인 바람
- 102동 210호 세대 발코니는 구조상 보일러 설치 위치 바닥에 턱이 발생 함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설치 예정이며, 위치 및 조명기구 변경은 불가함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에어컨 실외기는 아파트 외벽의 외부에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실외기 가동시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온풍 및 소음이 인접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외부 설치 타입의 실외기 설치 및 철거시 안전사고 등 주의가 필요함
- 발코니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선충출 설치되거나 세탁기 설치공간으로 사용되므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하며, 미관 저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단열공간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함
- 발코니내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빨래건조대 설치시 천장에 각종 매립배관이 위치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관리소 등을 통한 미확인이나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은 UBR(조립식) 적용으로 사용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세대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름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우리공사의 책임이 없음

■ 설계관련 유의사항

- 조감도 등에 표현된 각 주거동 외벽의 리브형태, 지붕 및 옥탑형태, 색채계획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고층부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제 시공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명칭 및 동 표시, 로고사인, 외부색채, 지붕 및 옥탑 형태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각종 인쇄물, 조감도, 단지모형 등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복도에 복도샤시는 설치되지 않음
- 전용 16형의 경우 소형냉장고, 가스쿠팩, 책상(결상은 미포함)이 설치됨
- 102동의 경우 1층에 관리소, 주민공동시설 등과 통합 계획이 되어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음
- 단지 내 조경, 승강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심의과정 등에 따라 조경시설물에 따른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름

- 복도에 설치되는 드레인인 우·오수 겸용으로 설치되며, 시공위치가 현관문 주위에 있어 비 또는 눈에 의한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음
-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와 침실사이 벽체는 내력벽이므로 벽체철거 및 추가 확장공사는 관련법에 의거 불가함
-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 및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이러한 결정에 동의 및 그와 관련된 제반 권리 또는 권한을 사업주체에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함

■ 지구 여건

- 본 지구의 남측 약 3Km 이내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지구 외곽에서 남서측으로 직선거리 3km 이내에 울산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외곽에서 북측으로 직선거리 5km 이내에 매곡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지구 외곽에서 남측으로 직선거리 5km 이내에 북구모동화일발산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지구 외곽에서 북측으로 호계매곡지구 주거단지가 4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당해지구와 산업로(국도7호선)연결을 위한 접속도로(대로2-63호선)중, 동해남부선 횡단구간(대로2-1호선) 부분은 동해남부선 철로 이설 후 설치가 가능함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며, 인근의 신설화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설치위치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변경,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개발사업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시계획도로, 공원, 녹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의 공사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구 내 학교부지 일부가 설립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및 버스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될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및 사업부지 인근에 축사 3개동이 위치하고, 추가 설치될 예정으로 파악되어 소음 및 냄새유발 등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아파트 단지로 인해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인접도로와 단지와 의 고차차로 인해 단지경계부위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우 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 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아파트 대지경계에 구조물 등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현장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치 않음
-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신청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공 전·후 공사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항,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름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분은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전실 설치 등) 시 관련법령에 의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귀책사유임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택지지구의 각종 주변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시행/허가관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시책 및 개별 소유주의 이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음
- 계약 및 입주 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특히 사용승인전 “구경하는 집”의 운영 및 대여는 공사현장 무단 점유로 간주되어 관련법령에 의거 운영자 및 대여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름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분양홍보물 등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을 수 있으며, 본공사

	<p>시에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입주자(준비용) 등의 지정입주외에는 입주 전까지 안전사고 및 도난방지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 출입이 불가함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LH 자체 브랜드명을 사용할 예정이며 그 외 시공회사 등의 브랜드명은 사용이 불가함 • 팜플렛, 공고문의 내용은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에 설치된 창호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가급적 이삿짐 등은 해당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라며(이 사 중 파손시 원상복구), 불가피하게 창호설치구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창호에 보강조치를 하여야 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계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임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남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자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터넷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입대문의	전 화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09:00 ~ 18:00)
	인터넷	LH청약센터 (apply.LH.or.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 C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모집공고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현장접수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p>△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센터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2022.08.16.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